

 보건복지부						<h1>보도참고자료</h1>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3. 1. 9.(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책임자	팀장	신명희	(044-202-3378)										
					사무관	박종용	(044-202-3375)										
					사무관	류재현	(044-202-3361)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 20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우선돌봄아동 범위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방과후 아동 돌봄 제공 목적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명), 다함께돌봄센터(829개소, 2만명, 22.11월기준)

○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돌봄수요 대응 >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 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시군구 단위의 지역돌봄협의회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하며 지자체, 학교, 교육 지원청 등의 역할을 연계 및 조정 역할 수행

<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 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98만 원, 생활복지사 261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309만 원, 돌봄선생님 287만 원

○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 (인건비) (기본 정원 30인 이하) 돌봄선생님(4시간 시간제 기준) 2명, (31~40인) 돌봄선생님 3명, (41인 초과) 돌봄선생님 4명

* (설치비) (기본 132㎡ 이하) 7,000만 원, (132~198㎡) 1억500만 원 (198㎡초과) 1억 4,000만 원

-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싹틔이세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마을돌봄시설 이용 방법 >

- 주소지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나, 시군구 아동돌봄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 <붙임> 1.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내용
2. 2023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주요내용

붙임 1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내용

- **돌봄수요 대응**
 -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
 - * (현행) 14시~19시 ⇒ (변경) 14시~20시
 - 매 학기(3월, 9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도록 함
 - **수요조사 결과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보고 후 **19시까지로 운영시간 조정 가능**
 -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 시에는 20시까지 운영
 - **우선돌봄 아동 범위 확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을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포함
 - * (기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 등
 - **농어촌 지역의 10인 미만 시설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원칙)** 10인 이상 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10인 미만으로 운영된 3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 중지
 - **(예외)** 농어촌 지역의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 **인건비 월 지원단가 인상 및 분리 교부**

<23년 인건비 편성기준>

정원구분	법정 종사자수	월 기준액
10인이하	1명	2,976천원
10인이상 19인이하	2명	5,586천원
20인이상 29인이하		
30인이상	3명	8,196천원

※ 시설장 월 2,976천원, 생활복지사 월 2,610천원 기준(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 편성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역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 별도 기준 마련·적용 가능

○ 종사자 교육비용 보조금 지출 범위 확대

-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교육시 보조금으로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출 가능
- * (기존) 중앙관서·지자체·아동권리보장원·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 기본운영비 지원 단가 현실화

-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최소 프로그램비 지출 기준 설정

<’23년 기본운영비 지원기준>

정원구분		법정 종사자수	월 기준액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10인 이상	동지역	2명	1,060천원	480천원
19인 이하	읍면지역	2명	1,231천원	490천원
20인 이상	동지역	2명	1,384천원	500천원
29인 이하	읍면지역	2명	1,580천원	520천원
30인 이상	동지역	3명	1,460천원	500천원
	읍면지역	3명	1,645천원	520천원

* 10인 미만시설은 1,060천원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 추가 운영비 지원 신설

-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정원규모에 따라 월 20~30만원*의 추가 운영비 지원
- * 19인 이하 월 20만원, 20~29인 이하 25만원, 30인 이상 30만원(다센터 운영 1년 후부터)

붙임 2 2023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주요내용

□ 돌봄수요 대응

-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
 - * (현행) 14시~19시 ⇒ (변경) 14시~20시
- 매 학기(3월, 9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도록 함
- 수요조사 결과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보고 후 19시까지로 운영시간 조정 가능
-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 시에는 20시까지 운영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권리헌장 게시, 운영규정 내 아동권리규정 명시 등 아동권리 보장 파트 신설
- 아동의 도보 이용 곤란 시 차량배치 등 등하원 방안 마련 명시 및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의무화 등

□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 인건비 인상 및 추가 지원
 - 센터장 1명(월 309만원), 돌봄선생님 2~4명*(4시간 시간제 기준, 월 143만원) 지원
 - * (정원 30인 이하) 돌봄선생님 2명, (31~40인 이하) 돌봄선생님 3명, (41인 초과) 돌봄선생님 4명
- 운영비 지원 단가 현실화(월 30만원 → 월 100만원)
- 면적에 따른 설치비 차등 지원 신설

면적	설치비	기자재비
132㎡ 미만	50백만원	20백만원
132㎡ 이상 198㎡ 미만	75백만원	30백만원
198㎡ 이상	100백만원	40백만원